

제1부

언론 관련 판결 분석

제1장 분석 목적 및 내용

제2장 소송제기 현황

제3장 소송 결과

제4장 손해배상청구 사건

제5장 정정 · 반론 · 추후보도청구 사건

제6장 기타 검토사례

제1장

분석 목적 및 내용

1. 분석 목적

언론중재위원회는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각급 법원이 선고한 판결 중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재산권, 초상권, 음성권 및 기타 인격권 침해에 관련된 민사판결(이하 '언론관련판결'이라 한다)을 수집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했다.

작년 한해 이뤄진 언론관련판결을 수집·분석한 결과,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언론 소송도 갈수록 다양화, 다채널화되고 있으며, 사실과 의견의 구별, 공적 인물에 대한 상당성 완화 기준 및 반론보도청구 거부 사유 등 중요한 언론 판결 법리 또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건의 사실관계와 담당 재판부의 깊은 고뇌를 거쳐서 해당 사건의 판단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이렇듯 정밀하게 재단하고 있는 법원 판결을 수집, 분석하고 그 중 의미있는 판결문을 전문 수록하는 것은 대체적 언론 분쟁해결 기관으로서 위원회의 법정 업무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언론관련판결을 연구하는 연구자들과 관련 정책 입안자들에게도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보고서는 이에 더해 2023년에 법원이 위원회 직권조정결정 후 법원 소송으로 전환된 사건에 대한 판결 결과를 취합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순수 유튜브 채널 상대로 제기된 명예훼손 소송 판결문을 모아 분석하였다.

2. 자료수집 방법

분석 대상 판결은 법원도서관에 마련된 '판결문 검색·열람 특별창구'를 통해 법원명과 사건번호를 수집하고, 해당 사건의 판결서를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의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 및 '판결서 사본 제공신청 서비스'를 이용하여 구매하였다.

판결 검색 시 ①정정보도 ②반론보도 ③추후보도 ④보도&명예훼손&손해배상 ⑤보도&초상 ⑥보도&음성 ⑦보도&사생활 ⑧보도&성명 ⑨기사삭제 ⑩언론중재위원회 ⑪유튜브&보도 등을 검색어로 사용하였다.

3. 분석 대상

가. 2023년도 분석 대상 언론 관련 판결은 169건

이 보고서의 분석 대상은 선고 일자를 기준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각급 법원에서 선고된 판결 중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한 법익 침해를 이유로 언론사, 언론사닷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 등) 또는 언론인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 판결로서 총 169건이 수집되었다.

나. 분석 대상 판결은 심급, 확정 여부와 무관

심급 및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2023년 선고된 언론 관련 민사 판결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다. 매체별 분석 대상 총 건수는 255건

다수 매체가 공동으로 피소된 사건의 경우, 매체별로 보도 내용이나 형식 등이 다르고 이에 따라 법원의 인용여부·인용내용·손해배상청구액 및 인용액 등이 다를 수 있다.

이 점을 감안하여 하나의 사건이더라도 피고가 다수 매체인 경우 매체별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했다. 통계분석의 목적상 소송 사건을 매체 수에 따라 분할한 결과, 매체별 분석대상건수는 총 255건이었다.

참고로 2022년 보고서의 언론관련판결 수집 건수는 173건이고, 매체별 분석 대상 총 건수는 316건이었다.

라. 청구권별 재분류 총 건수 445건

언론소송 중 상당수는 단일한 청구가 아니라 정정보도/반론보도/손해배상/기사삭제 등을 병합하여 청구하는 형태를 보인다. 법원이 각 청구별로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분석하기 위해 일부 분석 항목에서는 매체별 분석대상건수 255건을 청구권별로 나누어 분석을 시도했다. 이 경우 청구권별 총 건수는 445건으로, 2022년 476건과 비교하여 소폭 감소하였다.

4. 분석 내용

본 보고서는 2023년도 언론관련판결의 소송제기 현황, 소송 결과, 손해배상청구 및 정정·반론·추후보도청구의 소송 결과 등을 담고 있다. 항목별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소송제기 현황

심급별 소송건수, 청구별 소송건수, 침해유형별 소송건수, 원고유형별 소송건수, 매체유형별 소송건수, 매체별 피고구성

나. 소송 결과

심급별 처리 결과, 상소심의 원심판결 유지여부, 청구별 소송 결과, 침해유형별 소송 결과, 원고유형별 소송 결과, 매체유형별 소송 결과

다. 손해배상청구 사건

손해배상청구 사건 소송 결과, 청구액 및 인용액, 인용액 분포, 침해유형별 원고 승소율 및 인용액, 원고유형별 손해배상 승소율 및 인용액, 매체유형별 원소 승소율 및 인용액, 언론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결과,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액 및 법원 인용액, 손해배상청구 인용 사유, 손해배상청구 기각 사유

라. 정정·반론·추후보도청구 사건

정정보도, 반론보도 및 추후보도청구 소송 결과,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청구 기각 사유, 인용된 보도문의 게재시기 및 분량 등

마. 기타 검토 사례

언론중재위원회 이의신청 사건의 법원 판결 결과
순수 유튜브 채널 대상 청구사건 분석

5. 분석을 위한 코딩 항목 및 코딩 방법

가. 코딩 항목

〈표 1〉 코딩 항목

구분	코딩 항목	
일반사항	01. 판결번호	04. 심급
	02. 선고일자	05. 청구의 종류
	03. 법원명	06. 침해유형
원고	07. 대표 원고 분류	08. 공적인물 분류
피고	09. 사건 피고 구성	
	10. 매체별 피고 구성	
	11. 피고 언론인 개인 승소 여부	
매체 분류	12. 매체별 분류	
보도내용 분류	13. 방송 외 기사 유형	14. 방송프로그램 유형
청구별 처리결과	15. 청구별 처리결과	
판결 결과	16. 결과	
	17. 원고 기준 원심유지 여부	
청구별 세부 결과	18. 청구별 세부 처리결과	
	18-1. 정정보도	18-4. 기사삭제
	18-2. 반론보도	18-5. 손해배상
	18-3. 추후보도	
손해 배 상	19. 사건 청구액	22. 매체별 인용액
	20. 사건 인용액	23. 손해배상 인용사유
	21. 매체별 청구액	24. 손해배상 기각사유
정 정보 도	25. 정정 기각사유	26 정정 각하사유
반 론 보 도	27. 반론 기각사유	28. 반론 각하사유
판결주문에 따른 보도형식	29. 보도 시기	32. 보도기간 명시 여부
	30. 보도 위치	33. 보도본문 길이
	31. 활자 크기 명시 여부	

나. 코딩 방법

수집된 판결을 코딩하는 과정에서 개념이 모호하거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항목은 기존 판결분석 보고서의 분석 방법의 큰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적용하여 분류했다.

1) 대표 원고 분류

- ① 다수 원고 사건 중 개인 및 단체가 함께 청구한 경우에는 단체로 분류했다.
- ② 판결에서 공적 인물이라고 직접 언급하거나 암시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판례나 학설에서 꾸준히 공인으로 분류한 인물은 공적 인물 범주에 포함시켰다.
- ③ 공적 인물이란 정치인·고위공직자·전문인·언론인·기업인·연예인 등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물 또는 단체의 대표 등으로서 그 활동 사항이 공적 관심사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고위 공직자는 판결에서 언급된 경우나 「공직자윤리법」제3조 상의 공직자¹⁾를 말한다. 단, 국회의원이거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고위 공직자가 아니라 정치인으로 표기하였다.
- ④ 공적 인물 여부 판단에서는 현직뿐만 아니라 전직도 고려했다. 전직이라 함은 가령 원고의 재직 당시 일어난 사건에 대한 보도가 소송물이 되었으나 소송이 진행될 당시에는 원고가 임기만료나 사직, 해임 등으로 인하여 그 직을 그만둔 경우를 의미한다.
- ⑤ 일반인과 공적 인물이 함께 신청한 경우 공적 인물로 분류했다.

2) 매체명 분류

- ① 오프라인과 별도로 언론사닷컴을 상대로 한 청구(기사삭제 등)가 있거나 오프라인과 함께 언론사닷컴 기사에 의한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언론사닷컴을 별도의 매체로 보고 코딩했다.
예) 사건 피고는 (주)A신문사 단독이나, 청구취지에 A신문, A신문 홈페이지를 상대로 각 정정보도 등을 청구했다면 2개의 매체로 각각 코딩함
- ② 피고가 언론인 개인인 경우 해당 언론인 소속 매체를 기준으로 코딩했다.

3) 매체별 피고 분류

- ① 소송에 연루된 언론인들을 직위별로 파악하고자 대표/국장/부장/담당 등으로 분류하였다.
- ② 피고의 직위가 대표이사나 편집국장, 보도본부장 등이라도 기사를 직접 작성한 사람이라면 담당으로 분류했다.

1) 국무위원, 4급 이상의 공무원, 법관 및 검사, 대령 이상의 장교 등

4) 언론인 개인에 대한 판결 결과

언론인이라 함은 피고 중 언론사 대표, 기자, 프로듀서 등을 말한다. 언론사 소속이 아니거나 보도에 관여하지 않은 외주 제작사 직원 등은 언론인에 포함하지 않았다. 언론인 개인은 정정보도 등 보도계재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항목은 언론인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코딩하였다.

5) 청구별 처리결과

① 원고 승소 또는 원고 승소율에는 원고 일부승소 사건을 포함했다.

(원고 일부승소 사건 : 손해배상액 또는 정정보도문 등이 청구(항소)취지보다 금액 또는 감축된 경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였으나 정정보도만 인용되고 손해배상은 기각된 경우 등)

② 2심의 경우 그 처리결과는 항소기각 또는 원심판결 주문의 취소 및 변경의 형태로 나타나고 3심의 경우 그 처리결과는 상고기각이나 원심파기 등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는지 여부를 기준 삼아 항소심이나 상고심의 결론이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취지라면 원고 승소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취지라면 원고 패소로 분류했다.

6) 원고 원심유지 여부

2심의 원심은 1심, 3심의 원심은 2심을 말한다. 상소심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원심의 취지와 같다면 '승유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판단과 달리 상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면 '승변복' 등으로 코딩했다.

7) 매체별 청구액 및 인용액

① 피고가 다수인 경우 청구취지액 및 주문 인용액을 매체별로 구분하여 청구액 및 인용액으로 기재했다.

② 다수 매체가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청구 및 인용한 경우에는 동일한 금액을 매체별로 기재했다.

예) 'A신문사와 B신문사는 연대하여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청구 → 청구액에 A신문사에 1억원, B신문사에 1억원 각각 기재

③ 지면과 인터넷(언론사닷컴)에 동시에 보도계재/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피고가 1개 언론사이지만 매체 분류상 2개로 나누어지는 경우에는 청구취지의 청구액과 주문 인용액을 각 반액으로 나누어 청구액 및 인용액을 각각 기재했다.

예) A신문사에 정정보도/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지면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시에 보도계재를 요구한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액을 1/2로 나누어 기재

- ④ 언론인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에는 소속 매체에 대한 청구액 및 인용액에 합산했다. 단, 언론사와 언론인이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청구하거나 인용한 경우에는 언론사에 대한 청구액 및 인용액만을 기재하였다.
예) A신문사와 담당기자가 연대하여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청구 → 1억 원만 기재
- ⑤ 상소심의 판결문에 청구취지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원심의 청구취지액을 기재하되, 청구취지상 청구금액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금액을 기재했다.

제2장 소송제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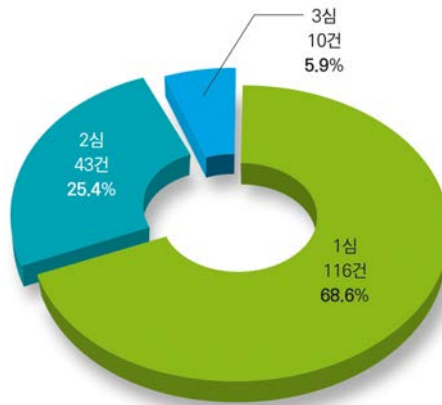
2023년도에 선고된 언론관련판결을 대상으로 심급별 소송건수, 청구별·침해유형별·매체유형별 소송건수 등 소송 일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심급별 소송건수

1심 68.6%, 2심 25.4%, 3심 5.9%

분석 대상 판결 169건의 심급별 소송건수를 살펴보면 1심 판결이 116건(68.6%), 2심(환송 후 심리 포함)이 43건(25.4%), 3심이 10건(5.9%)²⁾이다.

〈표 2-1〉 심급별 건수



2) 3심(대법원 판결)의 수집이 저조한 이유는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가 적을 뿐만 아니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된 판결은 민사소송법 상 판결서 열람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2. 청구별 소송건수

원고가 선호하는 피해구제 방법은 손해배상 > 정정보도/손해배상 순

소송건수를 매체별로 구분한 255건을 대상으로 청구한 내용을 분석하여 원고가 선호하는 피해구제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손해배상을 단독으로 청구한 경우가 87건(34.1%)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되어, 예년처럼 피해구제방법으로 손해배상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동시에 청구한 경우가 77건(30.2%)으로 그 다음 순위를 차지했다.

〈표 2-2〉 청구별 건수

청구명	건수	비율(%)
손해배상	87	34.1
정정보도/손해배상	77	30.2
손해배상/기사삭제	25	9.8
정정보도/손해배상/기사삭제	16	6.3
정정보도/반론보도/손해배상	16	6.3
반론보도	11	4.3
정정보도	6	2.4
정정보도/반론보도/손해배상/기사삭제	5	2.0
정정보도/반론보도	4	1.5
추후보도/손해배상	4	1.5
정정보도/기사삭제	2	0.8
반론보도/손해배상	2	0.8
합계	255	100.0

한편, 한 사건에 여러 청구가 함께 제기된 사건을 청구권별로 나누어 재합산해 살펴본 결과, 손해배상 청구가 232건(52.1%)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정보도청구 126건(28.3%), 기사삭제청구 45건(10.1%), 반론보도청구 38건(8.6%) 순으로 나타났다.

〈표 2-3〉 청구별 건수(각 청구권별 합산)

청구명	건수	비율(%)
손해배상	232	52.1
정정보도	126	28.3
기사삭제	45	10.1
반론보도	38	8.6
추후보도	4	0.9
합 계	445	100.0

3. 침해유형별 소송건수

침해유형별 최다 소송 유형은 명예훼손

소송건수 169건을 기준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침해 법익을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예년과 같이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사건이 139건(82.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밖에 명예/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가 9건(5.3%), 명예/신용/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가 7건(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침해 법익에 관한 통계는 판결문상 원고가 해당 법익의 침해를 주장한 내용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기사삭제청구가 있는 경우 일반적인 인격권 침해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나, 침해당한 인격권을 별도로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따로 통계화하지 않았다.

〈표 2-4〉 침해유형별 건수

침해유형	건수	비율(%)
명 예	139	82.2
명예/재산	9	5.3
명예/신용/재산	7	4.1
명예/사생활	5	3.0
명예/신용	2	1.2
명예/초상	2	1.2
초 상	2	1.2
명예/음성/사생활	2	1.2
성명/초상	1	0.6
합 계	169	100.0

4. 원고유형별 소송건수

언론소송을 가장 많이 제기한 원고유형은 일반인

언론 관련 소송건수 169건 중 원고의 유형을 살펴본 결과, 개인이 청구한 사건은 119건(70.4%), 단체가 청구한 사건은 50건(29.6%)이었다.

개인 및 단체를 포함하여 가장 많은 원고유형은 일반인으로 총 66건(39.1%)이 집계되었다. 공적 인물 중에서는 정치인 17건(32.1%), 기타 15건(28.3%), 공직자 13건(24.5%), 언론인 4건(7.5%) 순으로 나타났으며, 공적 인물 중 기타로 분류된 인물은 유명 탈북 시인,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배우자, 유명 목사, 방송사 스포츠 해설위원 등이었다.

단체 중에는 기업이 18건(10.7%)으로 가장 많은 언론 관련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집계됐고, 그 뒤로 일반단체 10건(5.9%), 종교단체 8건(4.7%) 등의 순이었다.

〈표 2-5〉 원고유형별 건수

원고유형		건수	비율(%)
개인	일반인	66	39.1
	공적인물	53	31.3
	소 계	119	70.4
단체	기업	18	10.7
	일반단체	10	5.9
	종교단체	8	4.7
	공공단체	3	1.8
	지방자치단체	3	1.8
	국가기관	3	1.8
	시민단체	2	1.2
	언론사	2	1.2
	교육기관	1	0.5
	소 계	50	29.6
	합 계	169	100.0

* 공적인물 유형별 건수

공적인물 유형	건수	비율(%)
정치인	17	32.1
공직자	13	24.5
언론인	4	7.5
전문인	2	3.8
기업인	2	3.8
기 타	15	28.3
합 계	53	100.0

5. 매체유형별 소송건수

인터넷 매체³⁾에 대한 소송이 가장 많아

소송건수를 매체별로 나누어 그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인터넷신문과 언론사닷컴을 합산한 인터넷 매체가 162건(63.6%)으로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방송 45건(17.6%), 일간신문 21건(8.2%), 주간신문과 뉴스통신이 각각 8건(3.1%) 순으로 나타났다.

〈표 2-6〉 매체유형별 건수

매체유형		건수	비율(%)
인터넷매체	언론사닷컴	82	32.2
	인터넷신문	80	31.4
	소계	162	63.6
방 송		45	17.6
일 간		21	8.2
주 간		8	3.1
뉴스통신		8	3.1
라디오		3	1.2
포 텔		2	0.8
월 간		2	0.8
기 타		1	0.4
불 명		3	1.2
합 계		255	100.0

사건 수가 가장 많은 인터넷 매체(162건)의 경우, 신문사 또는 방송사 홈페이지 등 언론사닷컴이 82건(32.2%), 인터넷신문이 80건(31.4%)으로 집계되었다.

판결문상 정확히 어떠한 종류의 매체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 불명(3건)으로 집계하였으며, 매체유형은 언급되지 않았으나 청구취지에서 인터넷에 보도문 게재를 청구한 경우는 일괄적으로 인터넷신문으로 집계하였다. ‘기타’로 분류된 1건은 노동조합에 발행하는 1회성 특집 간행물이었다.

3) 언론보도를 직접 생산하거나 직접 생산한 보도를 자사 또는 계열사 홈페이지에 제공 또는 매개하는 ‘인터넷 신문’과 ‘언론사닷컴’을 ‘인터넷 매체’로 분류하였다.

6. 피고 분류

언론소송의 피고 구성 언론사 단독이 가장 많아

매체유형별로 분류한 255건의 피고들을 분석한 결과, 언론소송에서 원고는 언론사 소속 개인보다 회사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사만 피소된 건이 123건(48.2%)으로 가장 많았고, 언론사와 담당 기자(또는 PD)가 함께 피소된 사건이 78건(30.6%)으로 뒤를 이었다. 본래 언론사 구성원이 아닌 제보자 등 비(非)언론인에 대한 소송은 분석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언론매체에 칼럼이나 사설을 기고한 외부 필자 등에게 소송이 제기된 경우 비언론인으로 분류하여 분석대상에 포함시켰고(1건),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 상대로 소송한 경우는 기타로 분류하였다(1건).

〈표 2-7〉 언론소송 피고 구성

언론소송 피고 구성	건수	비율(%)
언론사	123	48.2
언론사/담당 (담당 2인 이상 포함)	78	30.6
담당 (2인 이상 포함)	15	5.9
언론사/대표/담당 (담당 2인 이상 포함)	7	2.7
대표/담당	7	2.7
대 표	5	2.0
언론사/대표/국장/담당 (담당 2인 포함)	5	2.0
언론사/대표 (공동 대표 포함)	4	1.5
언론사/국장/담당 (담당 2인 이상 포함)	3	1.2
부장/담당	2	0.8
언론사/담당/비언론인	1	0.4
언론사/부장	1	0.4
언론사/비언론인	1	0.4
비언론인	1	0.4
언론사/대표/국장	1	0.4
기 타	1	0.4
합 계	255	100.0

피고 분류를 다시 언론사 및 언론사 내 직위별로 나누어 합산한 결과를 살펴보면, 언론사 224건(58.2%), 담당 기자(PD 등) 118건(30.7%), 대표이사(발행인 포함) 29건(7.5%) 등의 순으로 나타나, 다른 직책에 비해 담당기자(PD 등)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표 2-8〉 직위별 피고 분류(언론사 및 언론인 직위별 합산)

직위별 피고 구성	건수	비율(%)
언론사	224	58.2
대표이사	29	7.5
국 장	9	2.3
부 장	3	0.8
담 당	118	30.7
기타(비언론인)	2	0.5
합 계	385	100.0

제3장

소송 결과

이 장에서는 분석 대상 판결의 소송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했다. 구체적으로 심급별, 청구별, 침해유형별, 원고유형 및 매체유형별로 분류하여 원고 승소율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심급별 결과

언론 관련 소송 원고 승소율은 44.4%

2023년도 언론 관련 소송 169건을 분석한 결과 원고 승소율은 44.4%로 2022년(38.2%)에 비해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심급별로 원고 승소율을 살펴보면, 1심 원고 승소율은 42.2%, 2심(환송후심 포함)은 48.8%로 승소율이 전년 대비 높게 나왔다. 3심 원고 승소율 역시 50%로 전년도 33.3% 대비 높았으나 분석대상판결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표 3-1〉 심급별 소송결과

심급	원고승	원고패	원고 승소율(%)
1심 (116건)	49	67	42.2
2심(43건)	21	22	48.8
3심(10건)	5	5	50.0
합계	75	94	44.4

〈표 3-2〉 최근 3년간 심급별 승소율

심급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1심	42.5%	37.7%	42.2%
2심	50.0%	40.0%	48.8%
3심	37.5%	33.3%	50.0%
전체 원고 승소율	44.1%	38.2%	44.4%

2. 상소심의 원심 판결 유지 여부

상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유지되는 비율 81.1%

분석 대상 판결 169건 중 2심 43건과 3심 10건을 대상으로 원심판결 유지 여부를 조사했다. 원고의 청구취지가 인용되었는지 여부(일부 인용 포함)를 기준으로 승·패소를 분류한 결과, 상소심이 원심의 판결결과를 그대로 유지한 비율은 81.1%(43건)로 전년도 90.7%에 비해 9.6%p 낮아졌다.

이를 심급별로 살펴보면, 2심 법원의 원심판결 유지 비율은 81.4%였고, 3심 대법원의 원심 판결 유지 비율은 80%의 비율을 보였다.

〈표 3-3〉 상소심의 원심 판결 유지여부

구분	건수	원심판결 유지		원심판결 번복	
		원고승소판결 유지	원고패소판결 유지	원고승소판결 번복	원고패소판결 번복
2심	43 (100)	15 (34.9)	20 (46.5)	2 (4.7)	6 (13.9)
3심	10 (100)	5 (50.0)	3 (30.0)	2 (20.0)	0 (0.0)
합계	53 (100)	20 (37.7)	23 (43.4)	4 (7.6)	6 (11.3)
		43 (81.1)		10 (18.9)	

※ ()안의 숫자는 %

3. 청구별 결과

청구별 승소율도 2022년 대비 상승

169건의 소송 건을 매체별로 우선 분류한 후, 이를 다시 청구별로 재분류하여 원고 승소율을 살펴보았다. 정정보도청구(126건) 승소율은 27.8%로 나타났고 반론보도청구(38건)의 승소율은 57.9%, 손해배상청구(88건) 승소율은 37.9%로 나타났다. 추후보도청구 승소율은 100%를 기록하였으나 청구 사례가 4건에 불과하여 통계적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청구별로 계산한 원고 승소율은 36.4%로 2022년 32.4% 대비 상승하였다.⁴⁾

〈표 3-4〉 청구별 소송결과

청구	총 건수	기각	인용	원고 승소율(%)
정 정	126	91	35	27.8
반 론	38	16	22	57.9
추 후	4	0	4	100.0
기사삭제	45	32	13	28.9
손해배상	232	144	88	37.9
계	445	283	162	36.4

4) 1. 심급별 결과 통계에서 원고 승소율을 44.4%로 소개했으나 청구별 승소율 합산 값이 더 낮은 이유는 '심급별 소송결과' 통계는 하나의 소송에서 복수의 매체를 대상으로 다수의 청구를 동시에 제기하였는데 그중 일부 청구만 인용된 경우에도 원고 승소로 집계하였기 때문이다.

4. 침해유형별 결과

명예훼손 사건의 원고 승소율은 45.3%

소송 건수 169건을 가지고 원고의 청구취지를 토대로 원고가 주장했던 침해유형별 승소율을 분석한 결과, 명예훼손만을 이유로 제기한 소송의 원고 승소율은 45.3%로 나타났다.

그 밖에 '명예/재산', '명예/신용/재산' 등 다른 침해유형 사건의 원고 승소율은 표본이 적어 통계로서의 의미를 도출하기 어렵다.

〈표 3-5〉 침해유형별 결과

침해유형	사건수	원고 승소	승소율(%)
명예	139	63	45.3
명예/재산	9	3	33.3
명예/신용/재산	7	4	57.1
명예/사생활	5	1	20.0
명예/신용	2	0	0
명예/초상	2	2	100.0
명예/음성/사생활	2	2	100.0
초상	2	0	0
성명/초상	1	0	0
합계	169	75	44.4

5. 원고유형별 결과

일반인과 공적인물의 승소율 차이 18%를 상회해

원고유형에 따른 승소율은 개인의 경우 일반인 56.1%, 공적인물 37.7%로 집계되었다. 공적인물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정치인(23.5% 승소율)과 공직자(53.8% 승소율) 간의 승소율 차이도 상당하지만 표본이 부족하여 통계적 의미는 없다.

단체의 경우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승소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표본이 각각 3건에 불과하여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개인이 제기한 소송의 승소율은 47.9%로 2022년(42.0%)보다 약간 상승했고, 단체가 제기한 소송의 원고 승소율은 36.0%로 2022년(32.9%) 대비 역시 조금 증가했다.

〈표 3-6〉 원고유형별 결과

원고유형		사건수	원고 승소	원고 승소율(%)
개인	일반인	66	37	56.1
	공적 인물	53	20	37.7
	소 계	119	57	47.9
단체	기업	18	8	44.4
	일반단체	10	4	40.0
	종교단체	8	0	0
	공공단체	3	2	66.7
	언론사	2	1	50.0
	교육기관	1	0	0
	국가기관	3	1	33.3
	지자체	3	2	66.7
	시민단체	2	0	0
	소 계	50	18	36.0
합계		169	75	44.4

* 공적 인물 유형별 승소율

원고유형		사건수	원고 승소	원고 승소율(%)
공적 인물 유형	정치인	17	4	23.5
	전문인	2	1	50.0
	공직자	13	7	53.8
	기업인	2	1	50.0
	언론인	4	2	50.0
	기 타	15	5	33.3
	계	53	20	37.7

6. 매체유형별 결과

인터넷 매체 상대 사건의 원고 승소율 46.9%

소송건수를 매체별로 나눈 255건을 대상으로 매체유형에 따른 소송 결과를 분석한 결과, 사건수가 가장 많은 인터넷 매체 상대 소송(162건)의 원고 승소율은 46.9%(76건)로 2022년의 37.2% 대비 상승하였다. 일간지를 상대로 한 소송(21건)의 원고 승소율은 28.6%, 방송을 상대로 한 소송(45건)에서는 35.6%로 인터넷 매체 대비 낮은 승소율을 보였다.

〈표 3-7〉 매체유형별 소송 결과

매체유형	사건수	원고 승소	승소율(%)
인터넷 매체	162	76	46.9
방 송	45	16	35.6
일 간	21	6	28.6
뉴스통신	8	5	62.5
주 간	8	3	37.5
불 명	3	2	66.7
라디오	3	3	100.0
월 간	2	2	100.0
포 털	2	0	0
기 타	1	0	100.0
합 계	255	113	44.3

인터넷 매체를 언론사닷컴과 인터넷신문으로 구분해서 살펴본 결과 언론사닷컴 대상 사건 82건 중 원고 승소율은 35.4%(29건), 인터넷신문 80건 중 원고 승소율은 58.8%(47건)이었으며, 인터넷신문에 대한 원고 승소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8〉 인터넷 매체 유형별 소송 결과

인터넷 매체 유형	사건수	원고 승소	승소율(%)
언론사닷컴	82	29	35.4
인터넷신문	80	47	58.8
합계	162	76	46.9

제4장

손해배상청구 사건

언론관련판결에서 원고가 가장 선호하는 피해구제방식이 손해배상임은 전술한 바와 같다. 손해배상은 언론사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는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청구권과 달리 불법행위를 전제로 인정되는 청구권으로서 그 성격이 다르다.

이에 위원회는 청구권별로 분류된 사건 중 손해배상청구 사건만을 대상으로 원고 승소율, 청구액 및 인용액, 공동 피소된 언론인에 대한 판결 결과, 손해배상청구 기각 사유 등을 분석하였으며, 2023년도 보고서부터 손해배상청구 인용 사유도 추가하였다.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청구액 및 인용액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소수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 사건이 전체 평균값의 상승 또는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청구액 및 인용액의 중앙값⁵⁾과 최빈값⁶⁾을 함께 조사했다.

원고가 다수인 경우에는 사건 전체의 청구액과 인용액을, 피고가 다수인 경우에는 피고를 매체별로 구분하여 산출된 매체별 금액을 기준으로 했다. 또 피고가 언론인인 경우에는 해당 언론인이 소속된 매체의 청구액과 인용액에 언론인에 대한 청구액을 합산했다.

5) 중앙값이란 사례를 순위대로 배열하여 사례수가 홀수인 경우에는 한 가운데에 위치한 사례의 액수를, 짝수인 경우에는 한가운데 위치한 두개 값의 평균을 말한다.

6) 최빈값은 전체 사례 중 건수가 가장 많은 값이다.

1. 손해배상청구 사건 소송 결과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의 원고 승소율 37.9%

청구별 통계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이번 분석 대상 손해배상청구 232건 중 전부 혹은 일부 청구금액이 인용된 건은 88건이었다.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원고 승소율은 37.9%로 2022년 30.6% 대비 상승하였고, 최근 3년간 승소율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 최근 3년간 손해배상청구 원고 승소율

연도	전체 청구건수	손해배상청구건수	원고 승소	승소율(%)
2021	425	210	72	34.3
2022	476	271	83	30.6
2023	445	232	88	37.9

2. 청구액

매체별 평균 손해배상청구액 1억 3천 7백만 원, 중앙값 3천 1백만 원
청구액 기준 1억 원 이상 사건 비중 32.8%

언론관련판결을 매체별로 구분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액을 평균과 중앙값, 최빈값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청구액 평균은 약 1억 3천 7백만 원이었고, 중앙값은 약 3천 1백만 원, 최빈값은 5천만 원인 것으로 집계되어, 평균액이 전년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중앙값과 최빈값이 전년도와 비슷한 점을 보면 평균액의 증가는 1억 원 이상의 고액 청구 사건 수 및 청구 액수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손해배상청구 232건 중 1억 원 이상의 고액 청구 사건이 76건(32.8%)을 차지하여 전년도 비율 25.5%보다 7.3%p 증가하였으며, 최고 청구액은 21억 원, 최저 청구액은 50만 원이었다.

최근 3년간 손해배상청구액 관련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4-2〉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청구액 관련 현황

(단위: 원)

연도	건수	평균액	중앙값	최빈값	최저액	최고액
2021	210	90,298,846	30,000,050	50,000,000	1,000,000	2,000,000,000
2022	271	73,081,864	25,000,000	50,000,000	500,000	1,000,000,000
2023	232	136,704,394	31,000,000	50,000,000	500,000	2,100,000,000

3. 인용액

매체별 손해배상 평균 인용액 약 897만 원, 인용 최고액 1억 3천만 원

2023년 총 232건의 손해배상청구 중 청구가 인용되어 금전배상이 이루어진 건수는 88건(37.9%)이다. 매체별 평균 인용액은 약 897만 원이었고 중앙값은 300만 원. 손해배상 인용 최고액은 1억 3천만 원이었다. 손해배상청구액 현황과 유사하게 인용액 역시 평균액이 전년대비 300만 원이 넘게 증가했으나 중앙값과 최빈값은 감소하였다. 이는 1억 3천만 원의 손해배상 인용액이 나오는 등 일부 손해배상 인용 판결의 인용액이 평균을 크게 상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4-3〉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인용액 관련 현황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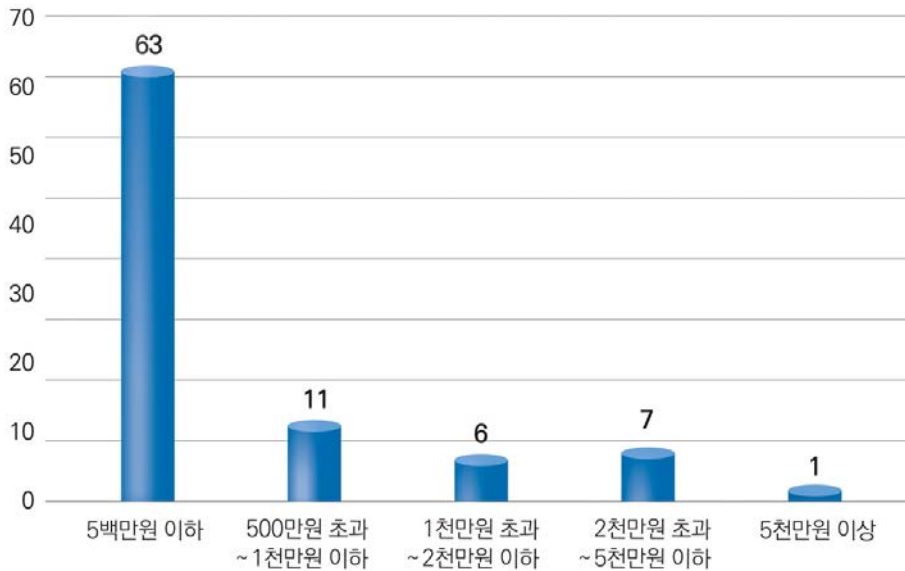
연도	건수	평균액	중앙값	최빈값	최저액	최고액
2021	72	8,818,056	4,750,000	3,000,000	1,000,000	70,000,000
2022	83	5,701,805	3,449,774	5,000,000	500,000	39,000,000
2023	88	8,967,020	3,000,000	3,000,000	500,000	130,000,000

4. 인용액 분포

손해배상 인용액 5백만 원 이하 71.6%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된 건의 인용액 분포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5백만 원 이하가 63건(71.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5백만 원 초과 1천만 원 이하가 11건(12.5%),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가 6건(6.8%),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가 7건(8%)으로 집계되었다. 수집된 판결문 중 인용 최고액은 1억 3천만 원이었고, 5백만 원을 초과하는 인용액 판결이 25건으로 전년도(20건)에 비해 증가하였다.

〈표 4-4〉 손해배상 인용액 분포



5. 침해유형별 손해배상 승소율 및 인용액

명예훼손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한 사건의 원고 승소율 38.6%

전술했다시피 손해배상청구 232건 중 88건이 인용되어 원고 승소율은 37.9%로 나타났다. 손해배상 청구 사건(232건)을 침해유형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사건수가 가장 많은 명예훼손 사건(184건)의 원고가 승소한 비율은 38.6%(71건)로 나타났다.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인용액 평균값은 약 703만 원, 인용액 중앙값은 250만 원이었다.

명예훼손 다음으로 많은 침해유형은 명예 및 재산권 침해(16건), 명예훼손과 신용훼손 및 재산권 침해(11건)를 동시에 주장한 사건이다. 승소율은 25%와 54.5%를 각 기록했으며, 인용액 평균값과 중앙값은 각 3,078만 원과 1,610만 원(명예/재산), 1,967만 원과 1,625만 원(명예/신용/재산)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분석 대상 사건수는 적지만,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건이 법원에서 인용되는 경우 명예훼손만을 다루는 사건에 비해 더 높은 금액이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침해유형별 손해배상청구 원고 승소율 및 인용액⁷⁾

침해유형	손배청구건수	인용	승소율 (%)	인용액 평균값(원)	인용액 중앙값(원)
명 예	184	71	38.6	7,027,778	2,500,000
명예/재산	16	4	25.0	30,774,450	16,097,800
명예/신용/재산	11	6	54.5	19,666,667	16,250,000
명예/사생활	9	2	22.2	500,000	500,000
명예/신용	4	0	0.0	0	0
명예/초상	3	3	100.0	7,000,000	10,000,000
명예/음성/사생활	2	2	100.0	10,000,000	10,000,000
초 상	2	0	0.0	0	0
성명/초상	1	0	0.0	0	0
합 계	232	88	37.9	8,967,020	3,000,000

7) 표 2-4는 전체 소송건수 169건 기준, 이 표는 매체별 청구 기준으로 손해배상청구 사건만을 집계하여 침해유형별 건수에 차이가 있음

6. 원고유형별 손해배상 승소율 및 인용액

일반인 손해배상 승소율 높고, 공적인물 인용액 상승해

원고유형별로 살펴본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원고 승소율은 일반인(102건)의 승소율이 53.9%(55건)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전체 손해배상청구사건 승소율(37.9%)보다 14%p 정도 높았다.

공적인물(69건)의 손해배상청구 승소율은 31.9%를 기록하였다. 2022년 32.9% 대비 약간 승소율이 하락했으나, 인용액 평균값은 약 1,900만 원, 중앙값은 850만 원으로 집계되어 작년의 약 385만 원과 150만원에 비해 매우 큰 폭으로 올라갔다.

공적인물은 승소율이 일반인에 비해서 22%p 적었지만, 인용액 평균값은 반대로 약 1,488만 원이나 높게 나왔다. 이는 법원이 공적인물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지만, 인용할 경우에는 손해액을 높게 산정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단체에서 청구한 유형 중 특이한 점은 종교단체에서 제기한 16건의 손해배상 소송이 모두 패소했다는 점이다. 작년에 언론사가 제기한 7건이 모두 패소한 것과 비견할 만하다.

기업이 청구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승소율은 26.9%로, 작년 33.3%에 비해 약간 떨어졌지만 평균 인용액과 중앙값은 약 1,729만 원 및 750만 원으로 작년(약 1,019만원, 500만 원)에 비해 모두 상승하였다.

〈표 4-6〉 원고유형별 손해배상청구 승소율 및 인용액

원고유형		손배청구건수	인용	승소율(%)	인용액 평균값(원)	인용액 중앙값(원)
개인	일반인	102	55	53.9	4,117,818	3,000,000
	공적 인물	69	22	31.9	19,000,000	8,500,000
단체	기업	26	7	26.9	17,285,714	7,500,000
	일반단체	7	2	28.6	8,500,000	8,500,000
	종교단체	16	0	0.0	0	0
	공공단체	3	1	33.3	2,000,000	2,000,000
	시민단체	4	0	0.0	0	0
	언론사	3	1	33.3	500,000	500,000
	교육기관	1	0	0.0	0	0
	지방자치단체	1	0	0.0	0	0
합계		232	88	37.9	8,967,020	3,000,000

〈표 4-7〉 공적 인물의 손해배상청구 사건 승소율 및 인용액

공적 인물 유형	손배청구건수	인용	승소율(%)	인용액 평균값(원)	인용액 중앙값(원)
정치인	23	6	26.1	8,666,667	3,500,000
전문인	3	1	33.3	7,000,000	7,000,000
공직자	15	4	26.7	18,250,000	10,000,000
기업인	4	2	50.0	50,000,000	50,000,000
언론인	5	3	60.0	2,000,000	500,000
기 타	19	6	31.6	30,000,000	10,000,000
계	69	22	31.9	19,000,000	8,500,000

7. 매체유형별 손해배상 승소율 및 인용액

방송 상대 손해배상 인용액 평균이 약 3,139만원으로 매우 높아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매체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전체 손해배상청구사건 원고 승소율(37.8%) 대비 인터넷매체 상대 승소율(41.9%)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인터넷매체 상대 인용액의 평균값(615만원)은 전체 인용액 평균값(897만 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방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인용액 평균값은 약 3,139만 원으로 다른 매체유형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참고로 2021년에는 방송 상대 인용액 평균이 약 1,217만 원, 2022년에는 약 1,121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천만 원이 더 높아진 것이다. 이는 유명 탈북 시인 등이 낸 소송 1심에서 1억 3천만 원의 고액 손해배상 인용액이 나온 영향 등으로 보인다. 대신 방송 상대 손해배상 인용률은 22.5%로 다른 매체에 비해서 낮은 편이었다.

〈표 4-8〉 매체유형별 손해배상청구 사건 원고 승소율 및 인용액

매체유형	건수	원고승	승소율(%)	인용액 평균값(원)	인용액 중간값(원)	
인터넷매체	인터넷신문	76	44	57.9	5,363,636	3,000,000
	언론사닷컴	72	18	25.0	8,060,989	3,500,000
	소계	148	62	41.9	6,146,739	3,000,000
방 송	40	9	22.5	31,388,889	20,000,000	
일 간	18	3	16.7	4,666,667	3,500,000	
주 간	8	3	37.5	3,000,000	2,500,000	
라디오	2	2	100.0	3,250,000	3,250,000	
뉴스통신	8	5	62.5	17,000,000	7,000,000	
포 털	2	0	0.0	0	0	
월 간	2	2	100.0	1,500,000	1,500,000	
기 타	1	0	0.0	0	0	
불 명	3	2	66.7	4,000,000	4,000,000	
합 계	232	88	37.9	8,967,020	3,000,000	

〈표 4-9〉 최근 5년간 손해배상사건 승소율과 인터넷 매체 상대 손해배상 승소율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손해배상사건 승소율	34.2%	30.4%	34.3%	30.6%	37.9%
인터넷 매체 상대 손해배상 승소율	38.0%	35.6%	39.7%	29.5%	4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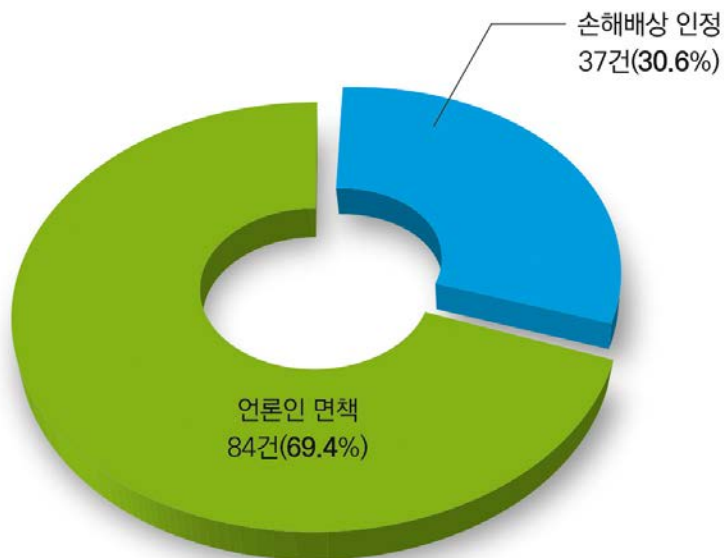
8. 언론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결과

언론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확률 69.4%

손해배상청구 232건 중 언론인(대표, 편집국장, 담당기자 등)을 단독으로 제소하거나 또는 공동 피고로 포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은 121건(52.1%)으로 집계되었다.

121건의 청구 중 청구기각 등으로 언론인이 면책된 경우는 84건(69.4%)이었다.⁸⁾ 언론인을 포함하여 제소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원고 승소율은 32.2%(39건)로 전체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의 원고 승소율(37.9%) 대비 약간 낮게 나타났다.

〈표 4-10〉 언론인 상대 손해배상청구 결과



8) 법원은 보도의무는 언론인이 아니라 언론사에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소송에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추후보도, 기사삭제 등이 인용되었더라도 언론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된 경우 언론인이 면책된 것으로 집계하였다.

9.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액과 법원 인용액

위원회 평균 조정액 약 166만 원, 법원 평균 인용액 약 897만 원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결과와 법원의 판결을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서로 다른 제도가 적용되는 두 분쟁해결절차의 손해배상액 양태를 살펴보는 것은 언론분쟁해결을 위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어 별도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위원회 평균 조정액(조정성립 및 직권조정결정 등을 통해 인용된 액수 포함)은 약 166만 원, 중앙값은 100만 원으로 2022년도(각 약 259만 원, 2백만 원) 대비 100여만 원 가까이 하락하였고, 법원 평균 인용액은 약 897만 원, 중앙값은 약 300만 원이었다.⁹⁾

〈표 4-11〉 2023년도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위원회 조정액과 법원 인용액

구분	인용건수	평균액(원)	중앙값(원)	최저액(원)	최고액(원)
언론중재위원회	28	1,660,870	1,000,000	300,000	5,000,000
법원	88	8,967,020	3,000,000	500,000	130,000,000

9)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한 두 기관의 결과 비교가 보다 합리적이기 위해서는 동일한 사건에 대한 차이를 비교, 분석해야 할 것이다. 이 분석은 두 기관이 각기 다른 사건을 심리하여 판단한 결과이므로 분석 결과를 단순 비교하여 위원회와 법원의 손해배상액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고, 두 기관의 손해배상액의 전체적인 추이를 살펴보려는 데에 의미가 있다.

10. 손해배상청구 인용 사유

허위와 진실상당성 부정이 손해배상 청구의 주된 인용사유

2023년 매체별로 분류한 손해배상청구 건 중 인용된 88건을 대상으로 판결 이유에 적시된 사유를 항목화하여 분석했다.

분석 결과,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인용과 기각은 결국 법원의 위법성 조각사유(공익성·진실성·진실상당성) 인정 여부로 귀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침해유형별 인용 사유를 살펴보면 보도의 공익성은 인정되지만 진실성 또는 진실상당성이 부정되어 손해배상을 명한 경우가 32건(36.4%), 공익성에 관한 언급 없이 진실성 또는 진실상당성 부정으로 인용한 건이 27건(30.7%) 및 허위 보도로 인용한 건이 11건(12.5%)으로 나타났다.

전체 인용 건 중 9건(10.2%)에 대해 법원이 명시적으로 공익성을 부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에서 손해배상을 면책받기 위해서는 보도의 공익성 요건을 기본적으로 충족시켜야 함을 보여주는 수리라고 할 수 있다.

기타로 분류된 건은 음성권 및 사생활 침해를 주장한 건에서 음성 녹음의 수단과 방법의 보충성과 상당성이 결여되었다고 본 사례 2건과 피고 언론사가 응소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원고 청구가 전부 인용된 건 1건이다.

〈표 4-12〉 손해배상청구 인용 사유

인용 사유	건수	비율(%)
공익 인정/허위/진실상당성 부정	32	36.4
허위/진실상당성 부정(및 기타)	27	30.7
허 위	11	12.5
공공의 이익 부정/허위(및 진실상당성 부정)	5	5.7
사회적 평가 저하(및 공익 부정)	3	3.4
공공의 이익 부정	3	3.4
피해자의 동의 없음	2	2.3
공공의 이익 부정/피해자 동의 없음	1	1.1
불 명	1	1.1
기 타	3	3.4
합 계	88	100.0

11. 손해배상청구 기각 사유

공익성 및 진실성 또는 공익성 및 진실상당성이 기각 사유 중 대부분 차지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언론보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법원은 민주주의 성숙에 필수적인 언론의 자유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언론보도가 공익성을 전제로 진실성 또는 진실상당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위법성이 조각돼 손해배상 책임을 면책시키는 법리를 유지하고 있다. 언론관련판결에서 손해배상을 기각한 판결은 보도내용이 사실주장이 아니라거나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는 등 일부 사례를 제외하면 대부분 위법성 조각을 이유로 들고 있다.

2023년 매체별로 분류한 손해배상청구 총 232건 중 기각된 건은 144건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된 사건의 기각 사유를 통계화하였다. 소송물인 보도가 한 개 이상이거나 문제된 사실관계가 여럿일 경우 다양한 기각사유가 적용될 수 있는데, 판결문에서 명시된 주된 기각사유 위주로 코딩하였다.

침해유형별 기각 사유를 살펴보면 보도의 공익성 및 진실성이 인정되어 기각된 경우가 36건(25%)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공익성·진실성·진실상당성을 모두 위법성 조각 사유로 인정한 사례는 31건(21.5%), 공익성·진실상당성을 주된 기각사유로 인정한 경우가 14건(9.7%)으로 조사되어, 언론관련판결에서는 주로 공익성 및 진실성 또는 공익성 및 진실상당성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법원은 사실과 의견의 구분에서 문제된 보도 내용이 사실적 주장 또는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내지 논평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손해배상 기각 사유 중 단독 또는 다른 이유와 더불어 사실 적시가 아니라고 본 건수가 33건(전체 기각사유 중 22.9%)에 달하고 있다.

기각 사유가 기타인 건은 추후보도 청구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법원이 해당 청구가 이전 소송에서 각하되었음을 이유로 기각한 건이다.

〈표 4-13〉 손해배상청구 기각 사유

기각 사유	건수	비율(%)
공익성/진실성	36	25.0
공익성/진실성/진실상당성 (및 기타 포함)	31	21.5
사실적시 없음	14	9.7
공익성/진실상당성	14	9.7
공익성/사실적시 없음/진실성 (및 평가저하 아님/진실상당성 포함)	10	6.9
진실성	12	8.3
사실적시 없음/진실성	7	4.9
공익성	5	3.5
평가저하 아님/진실성	4	2.8
당사자 불특정/진실성	2	1.4
공익성/사실적시 없음	2	1.4
진실상당성	2	1.4
진실성/진실상당성	1	0.7
당사자 불특정	1	0.7
기 타	2	1.4
불 명	1	0.7
합 계	144	100.0

제5장

정정 · 반론 · 추후보도청구 사건

1. 정정보도청구 사건 소송 결과

정정보도청구 사건의 원고 승소율 27.8%

169건의 분석대상판결을 매체별로 분류한 후 청구별로 재분류했을 경우 정정보도청구건은 총 126건이었다.

정정보도청구사건(126건) 중 정정보도만을 단독으로 청구한 사건은 6건(4.7%)에 불과했고,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병합하여 청구한 사건이 77건(61.1%)으로 가장 많았다. 그 밖에 정정 · 반론 · 손해청구와 정정 · 손해 · 기사삭제청구가 각각 16건(12.7%), 정정 · 반론 · 손해 · 기사삭제청구 5건(4.0%) 등의 분포를 보여, 대부분의 정정보도청구 사건에서 손해배상, 기사삭제 등의 청구가 병행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가운데 법원이 정정보도청구를 인용한 것은 총 35건으로 원고 승소율은 27.8%로 나타나, 전체 언론관련판결 원고 승소율(44.4%)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표 5-1〉 정정보도 및 병합청구 현황

구분	건수	비율(%)
정정보도 · 손해배상	77	61.1
정정보도 · 반론보도 · 손해배상	16	12.7
정정보도 · 손해배상 · 기사삭제	16	12.7
정정보도	6	4.7
정정보도 · 반론보도 · 손해배상 · 기사삭제	5	4.0
정정보도 · 반론보도	4	3.2
정정보도 · 기사삭제	2	1.6
합 계	126	100.0

〈표 5-2〉 최근 3년간 정정보도청구 원고 승소율

연도	전체 청구건수	정정보도 청구건수	원고 승소	승소율(%)
2021	425	143	57	39.9
2022	476	135	43	31.9
2023	445	126	35	27.8

2. 정정보도청구 기각 사유

정정보도청구 사건의 주된 기각 사유는 ‘보도의 진실성’

정정보도청구 사건 중 원고가 패소한 사건(91건)의 기각 사유를 분석한 결과 보도의 진실성을 인정하여 기각한 사례가 63건(69.2%)으로 가장 많았다.

앞서 손해배상청구 기각 사유와 마찬가지로 법원이 문제된 보도 내용이 사실적 주장이 아닌 의견이나 논평에 해당한다고 보고 정정보도를 기각한 건도 24건(26.4%)로 상당한 비율을 보였다.

보도내용이 허위사실이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정정보도를 기각한 사례가 있는데, 이는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권이 아니라 민법에 근거하여 정정보도청구권을 주장한 경우다.¹⁰⁾ 이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보도했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는 정정보도의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항목은 ‘위법성 조각’에 해당한다고 분류하였는데 1건에 불과하였다. 정정보도청구의 대부분은 언론중재법에 따른 청구임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보도내용의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다양한 판단이 이루어진 경우 판결문에 나타난 주된 기각사유 위주로 통계화하였다.

〈표 5-3〉 정정보도청구 기각 사유

기각 사유	건수	비율(%)
진실성	63	69.2
사실주장 아님/진실성	13	14.3
사실주장 아님 (및 지엄말단 포함)	11	12.1
개별적 연관성 부정/진실성	3	3.3
위법성 조각	1	1.1
합 계	91	100.0

10) 민법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3. 반론보도청구 사건 소송 결과

반론보도청구 사건의 원고 승소율 42.1%

분석대상 판결 중 반론보도청구 사건은 총 38건으로, 이 중 반론보도만을 단독으로 청구한 사건은 11건(28.9%)로 정정보도청구 사건 분포와 다소 다른 경향을 보였다.

반론보도청구 사건의 원고 승소율은 42.1%(16건)로 작년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으며, 손해배상청구 사건(37.9%)과 정정보도청구 사건(27.8%)에 비해 인용 비율이 높았다.

〈표 5-4〉 반론보도 및 병합청구 현황

구분	건수	비율(%)
정정보도 · 반론보도 · 손해배상	16	42.1
반론보도	11	28.9
정정보도 · 반론보도 · 손해배상 · 기사삭제	5	13.2
정정보도 · 반론보도	4	10.5
반론보도 · 손해배상	2	5.3
합계	38	100.0

〈표 5-5〉 최근 3년간 반론보도청구 원고 승소율

연도	전체 청구건수	반론보도청구건수	원고 승소	승소율(%)
2021	425	38	14	36.8
2022	476	39	16	41.0
2023	445	38	16	42.1

4. 반론보도청구 기각 사유

주된 기각 사유는 보도내용이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가 많아

반론보도청구 사건 38건 중 인용된 사건(16건)을 제외하고 기각된 사건은 22건이었다. 원고가 반론보도를 구한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는 이유로 기각된 경우(7건)가 가장 많았다.

그 밖에 대상 보도가 사실적 주장이 아니라 의견 내지 논평이라고 보거나(4건), 청구하는 반론이 보도의 주된 내용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엽말단적인 부분에 대한 것인 경우(4건) 등에 해당하는 경우 반론보도청구를 기각하였다.

〈표 5-6〉 반론보도청구 기각 사유

기각 사유	건수	비율(%)
사실에 반함	7	31.8
사실주장 아님	4	18.2
지엽말단	4	18.2
사실에 반함/지엽말단	2	9.1
기반론행사(및 지엽말단 포함)	2	9.1
사실주장 아님/사실에 반함	1	4.5
기타	2	9.1
합계	22	100.0

5. 판결 주문에 따른 정정보도등의 형식

법원에서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 추후보도(이하 '정정보도등'이라 한다) 게재를 명한 사건을 청구별로 집계한 결과는 총 55건이었다.

매체유형별로 분류하면 인터넷 매체가 33건(언론사닷컴 23건, 인터넷신문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방송 11건, 일간신문 3건 등의 순이었다. 인용한 보도의 유형은 정정보도 35건, 반론보도 16건, 추후보도 4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동시에 인용한 사건은 1건이었다.

〈표 5-7〉 매체유형별 정정보도등의 인용건수(청구별)

매체유형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계
일간신문	2	1	0	3
주간신문	2	0	0	2
월간	2	0	0	2
방송	5	4	2	11
라디오	0	2	0	2
뉴스통신	2	0	0	2
인터넷신문	7	3	0	10
언론사닷컴	15	6	2	23
기타	0	0	0	0
합계	35	16	4	55

한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이 정정보도등을 명하는 때에는 보도문의 내용·크기·시기·횟수·게재위치 또는 방송순서 등을 정하여야 한다.¹¹⁾ 이에 따라 판결 주문에서 법원이 인용한 보도문의 게재 시기와 위치, 본문 길이 등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1) 제27조(재판) ② 법원은 정정보도청구등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명할 때에는 방송·게재 또는 공표할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 크기, 시기, 횟수, 게재 위치 또는 방송 순서 등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가. 정정보도등의 게재 시기

언론소송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가 확산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송 진행 결과 못지않게 신속함이 중요하다. 이에 언론중재법에서는 언론소송은 다른 재판보다 우선하여 처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¹²⁾ 사건처리기간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사건개시일과 종결일을 분석해야 하지만, 본 보고서 작성을 위해 수집한 판결문만으로는 사건개시일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사건처리기간을 대체하여 정정보도등 청구가 인용된 보도문을 게재하라고 명하는 시기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2023년 언론관련판결에서 법원은 정정보도등 게재를 인용할 때 ‘판결 확정 후 7일내’ 게재하라고 명한 경우가 29건(52.7%)으로 그 빈도수가 가장 많았다. 대상매체가 방송이거나 월간지인 경우 ‘확정 후 최초’ 방송 또는 지면에 이행하라고 선고하기도 하였으나, ‘확정 후 7일내’와 ‘확정 후 3일내’가 전체 인용 건수의 65.7%(23건)을 차지했다.

〈표 5-8〉 정정보도등의 게재 시기

매체유형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계
확정 후 최초	4	2	0	6
확정 후 3일내	6	0	0	6
확정 후 7일내	17	12	0	29
확정 후 14일내	4	2	4	10
송달 후 7일내	2	0	0	2
송달 후 14일내	2	0	0	2
합계	35	16	4	55

12) 제27조(재판) ①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는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29조(언론보도등 관련 소송의 우선 처리) 법원은 언론보도등에 의하여 피해를 받았음을 이유로 하는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한다.

나. 정정보도등의 게재 위치

청구에 따라 인용된 정정보도등이 피해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인용 보도문이 소송 대상 보도와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위치에 게재되어야 한다.¹³⁾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가 인용된 55건에 대해 매체유형별 보도 위치를 조사한 결과, 신문, 잡지 등 지면으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의 경우 1면 게재가 3건, 방송의 경우 첫머리가 5건, 인터넷 매체의 경우 제목이나 내용의 일부를 초기화면에 게시하도록 한 사례가 20건으로 나타났고, 특히 법원이 인터넷 매체의 경우에 인용 보도문이 매체 이용자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 보인다.

〈표 5-9〉 인용된 정정보도등의 위치(매체유형별)

구분	보도위치	건수	비율(%)
정기간행물	1면	3	42.9
	1면 외	4	57.1
	기타/불명	0	0
소 계		7	100.0
방송·라디오	첫머리	5	38.5
	끝	3	23.0
	기타/불명	5	38.5
소 계		13	100.0
인터넷 매체	제목이나 내용의 일부가 초기화면에 노출	20	62.5
	주문상 초기화면에 게재하라는 내용 없음	10	31.3
	기타/불명	2	6.2
소 계		32	100.0
뉴스통신	제목이나 내용의 일부가 초기화면에 노출	1	50.0
	주문상 초기화면에 게재하라는 내용 없음	1	50.0
	기타/불명	0	0
소 계		2	100.0

※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동시 게재한 경우가 1건 있어 〈표 5-7〉과 합계가 일치하지 않음

13)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⑥ 언론사등이 하는 정정보도는 공정한 여론형성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실공표 또는 보도가 이루어진 같은 채널, 지면(紙面) 또는 장소에서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방송의 정정보도문은 자막(라디오방송은 제외한다)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읽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 정정보도등의 보도문 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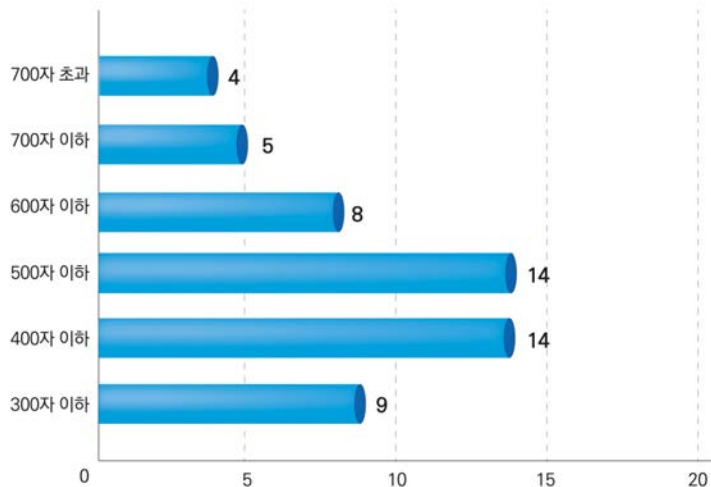
301~500자 보도문 게재 판결이 가장 많아

언론중재법은 언론소송의 처리기간 및 인용 보도문의 게재위치 뿐만 아니라 인용 보도문의 내용 등이 원고의 피해구제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¹⁴⁾ 원칙적으로 인용 보도문이 소송 대상 보도 중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분량을 초과할 수 없어 소송 대상 보도보다 짧을 수밖에 없지만, 피해회복의 조치로서 인용 보도문 길이의 경향을 파악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법원이 보도게재를 명한 사건에서 판결문상 보도 본문의 길이를 확인할 수 있는 54건을 통계화한 결과¹⁵⁾, 글자 수 기준으로 400자 이하 및 500자 이하가 각각 14건(25.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00자 이하가 9건(16.7%), 600자 이하가 8건(14.8%)의 순이었으며, 본문의 길이가 700자를 초과한 보도는 4건(7.4%)으로 집계됐다.

이 항목은 법원의 비실명화처리로 인해 축소된 분량을 감안하여 코딩하였다.¹⁶⁾

〈표 5-10〉 인용된 정정보도등의 본문 길이



14) 제27조(재판) ③ 법원이 제2항의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 등을 정할 때에는 청구취지에 적힌 정정보도문·반론보도문 또는 추후보도문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15) 판결문상 인용 보도문 제목을 블라인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2021년도 보고서부터 제목 형식 및 분량에 대한 통계화 중단. 청구별로 보도 게재를 명한 건은 55건이나 정정 및 반론보도를 동시에 명한 판결이 1건임

16) 예컨대 비실명화처리된 보도문의 길이가 590자인 경우 600자 이상으로 코딩하였음

제6장

기타 검토사례

1. 언론중재위원회 이의신청 사건의 법원 판결 결과

위원회 이의신청 사건의 원고 승소율 83.3%

언론중재위원회는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들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언론중재법 제22조에 따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직권조정결정)을 할 수 있다. 당사자 중 일방이 이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하는 경우 동조 제4항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간주되어 소송 절차가 진행된다.

작년 보고서에는 2020년~2022년(3년)동안 위원회의 직권조정결정 이후 당사자의 이의신청에 따라 소송 절차로 전환된 사건(이하 '위원회 이의신청 사건')을 통계화하고 결과를 분석하였고, 올해 보고서는 2023년에 법원이 위원회 이의신청 사건에 대해 내린 판결 결과를 취합하여 정리하였다.

위원회가 직권으로 보도중지, 기사 열람차단, 손해배상 등을 결정한 사안에 대해 법원이 원고 승소(일부승소 포함) 판결을 내린 경우는 12건 중 10건으로 나타나 그 비율이 83.3%에 이르렀다.

참고로 이 통계는 소송 도중 당사자 간 합의 후 소송을 취하하거나 민사조정 또는 화해권고결정 등으로 종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실제 판결이 선고된 사건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사건 건수가 적은 관계로 실제 승소율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표 6-1〉 위원회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2023년 법원 소송결과

(2023. 1. 1.~2023. 12. 31. 선고일 기준)

선고일	법원	판결번호	위원회 사건번호(청구)	법원 판결 내용
2023-01-12	수원지법	2021가합24137	2021경기조정196·197·198/199·200·201 (각 정정·반론·손배)	원고 일부승
2023-01-12	수원지법 평택지원	2022가합267	2022경기조정159·160(정정·손배)	원고 패
2023-02-02	대법원	2022다287246, 2022다287253(병합)	2020서울조정2155·2156/2157·2158 (각 정정·반론)	원고 일부승
2023-02-02	대법원	2022다287260	2020서울조정2054(정정)	원고 일부승
2023-02-08	의정부지법	2021가합890	2021서울조정1257·1258(정정·손배)	원고 패
2023-02-15	의정부지법	2021가합746	2021서울조정625·626/627·628 (각 정정·손배)	원고 일부승
2023-04-07	서울고법	2022나2034945	2021서울조정1252·1253/1254·1255 (각 추후·손배)	원고 일부승
2023-04-28	서울고법	2022나2039186	2021서울조정1457/1458(각 정정)	원고 일부승
2023-06-01	인천지법	2022가합278	2022경기조정36·37(정정·손배)	원고 일부승
2023-06-16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3330	2021서울조정2301/2302(각 정정)	원고 승
2023-06-29	대법원	2023다230285	2021서울조정1252·1253/1254·1255 (각 추후·손배)	원고 일부승
2023-08-18	서울고법	2023나2011925	2021서울조정625·626/627·628 (각 정정·손배)	원고 일부승

2. 순수 유튜브 채널 대상 청구사건 분석

법원은 유튜브 채널에 기성 언론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있어

작년 보고서는 기성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영상에 대한 보도계재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7건)를 수집하여 분석하였고, 올해는 2023년에 선고된 순수 유튜브 채널(기성 언론사 운영 유튜브 채널 제외) 대상 법원 소송(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한 보도 계재 또는 손해배상 청구, 가치분 포함, 기성 언론 대상 공동 청구사건 포함, 이하 ‘유튜브 대상 사건’) 결과를 취합하여 정리하였다.

수집한 유튜브 대상 사건 판결은 총 15건으로, 이를 청구별로 보면 손해배상 청구가 10건으로 기존 언론 대상 소송과 비슷하게 유튜브 대상 소송도 손해배상 청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기성 언론사와 묶어서 공동 피고가 청구한 건들을 제외하고 순수 유튜브만 대상으로 청구한 본안 사건은 9건인데, 이 중에 유튜브만 대상으로 정정보도청구를 단독 또는 손해배상과 공동으로 청구한 건이 2건이다.

손해배상 청구 10건 중 손해배상이 인용된 건은 6건인데, 피고가 응소하지 않아서 원고 청구액이 전액 인용된 건을 제외한 최고 인용액은 2,000만 원이다. 손해배상을 인용한 일부 사건 판결에서 재판부는 유튜브 채널이 유튜브의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을 고려해서 이에 상응하는 진실 확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시했다(2021가합575651).

순수 유튜브 대상 사건 중 정정보도 청구 2건은 모두 기성 언론과 동일하게 서울서부지법 및 서울중앙지법의 언론전담 재판부에 각각 배당되었다. 판결문 내용 역시 재판부가 유튜브 채널을 언론사와 동일한 지위에 놓고서 언론보도의 진실성에 관한 판결 법리를 적용하여 정정보도 인용 또는 기각 여부를 판단하였다. 특히 인용된 경우 정정보도문의 형식이 기성 방송사 대상 정정보도문 형식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2020가합30392). 현재 순수 유튜브 채널은 현행법상 언론중재법 적용이 되는 언론의 범주에서 제외되어 있음에도 법원은 명예훼손, 정정보도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 이들에 대해 기성 언론에 준하는 위상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 2023년 유튜브 대상 사건 결과

선고일자	법원	판결번호	청구	결과	손배 인금액	비고
02-14	서울중앙지법	2021나64834	손배	원고 패	0	페이스북도 같이 청구
03-31	서울고법	2022나2036576	손배	원고일부승	1,500만원	1심과 동일
04-14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35691	손배	원고 패	0	기성 언론사 공동 피고
05-11	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075579	손배	원고 일부승	1,000만원	페이스북도 같이 청구
06-09	서울중앙지법	2023카합20002	영상삭제	채권자 일부승		가처분
06-09	서울중앙지법	2023카합20204	영상삭제	채권자 일부승		가처분
07-05	서울중앙지법	2022가합544319	손배 · 영상삭제	원고 일부승	1,500만원	
09-21	서울북부지법	2023가합20178	영상삭제	채권자 패		가처분
09-22	서울서부지법	2020가합30392	정정 · 손배	원고 일부승	2,000만원	정정도 인용
09-22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79530	정정	원고 패		
10-11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75651	손배 · 영상삭제	원고 일부승	2,000만원	
11-13	서울북부지법	2023가합20194	영상삭제	채권자 패		가처분
11-30	대법원	2023다220790	손배	원고 패	0	페이스북도 같이 청구
12-08	서울중앙지법	2022가합507174	정정 · 손배	원고 패	0	기성 언론사 공동 피고
12-21	서울중앙지법	2023가단5389555	손배	원고 승	1억 원	무변론

분석 판결 목록(민사 169건)

번호	판결번호	선고일자	법원명	심급	청구명	결과
1	2021가소2209(본소) 2022가소369411(반소)	2023-01-10	서울서부지법	1심	손배	기각
2	2021가합10860	2023-01-12	광주지법 순천지원	1심	정정/손배	인용
3	2021가합104987	2023-01-12	서울남부지법	1심	정정/손배/기사삭제	기각
4	2022나47459	2023-01-12	서울서부지법	2심	손배	인용
5	2021가합24137	2023-01-12	수원지법	1심	정정/손배	인용
6	2022가합267	2023-01-12	수원지법 평택지원	1심	정정/손배	기각
7	2022나2007615	2023-01-13	서울고법	2심	손배	인용
8	2022나2019137	2023-01-13	서울고법	2심	손배	기각
9	2022나2021574	2023-01-13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기사삭제	인용
10	2022가합32576	2023-01-13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11	2022가합101099	2023-01-13	인천지법 부천지원	1심	손배/기사삭제	인용
12	2022가합33760	2023-01-13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손배/기사삭제	기각
13	2021가단259040	2023-01-18	서울남부지법	1심	손배	기각
14	2022가합509712	2023-01-18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기각
15	2021가합59392	2023-01-19	광주지법	1심	정정/손배	인용
16	2020나2037971	2023-01-27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인용
17	2022나2016633	2023-01-27	서울고법	2심	손배/기사삭제	기각
18	2022가단5048185	2023-01-27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인용
19	2021가합525298	2023-01-27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반론/손배	인용
20	2021가합31354	2023-01-27	서울서부지법	1심	손배/기사삭제	인용
21	2021가단5122345	2023-02-01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인용
22	2022가합532170	2023-02-01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인용
23	2022가합534145	2023-02-01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24	2022가합506089	2023-02-01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기각
25	2022다287246 2022다287253(병합)	2023-02-02	대법원	3심	정정/반론/손배	인용

번호	판결번호	선고일자	법원명	심급	청구명	결과
26	2022다287260	2023-02-02	대법원	3심	정정	인용
27	2022가합103736	2023-02-02	부산지법 동부지원	1심	반론	인용
28	2020가단345212	2023-02-02	부산지법	1심	손배	기각
29	2021가합890	2023-02-08	의정부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30	2021가합106945	2023-02-09	서울남부지법	1심	정정/손배	인용
31	2021가합107641	2023-02-09	서울남부지법	1심	정정/손배	인용
32	2022나2023280	2023-02-10	서울고법	2심	손배	기각
33	2021가합39495	2023-02-10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34	2022나2028452	2023-02-10	서울고법	2심	반론	기각
35	2022가단5015109	2023-02-10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인용
36	2021가합746	2023-02-15	의정부지법	1심	정정/손배	인용
37	2020가합118903	2023-02-16	서울남부지법	1심	정정/반론/손배	기각
38	2022나2026654	2023-02-23	서울고법	2심	반론	기각
39	2022가단100239	2023-03-08	대전지법 천안지원	1심	손배	인용
40	2022나2007318	2023-03-17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기각
41	2022가단5051488	2023-03-22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인용
42	2022가합532163	2023-03-22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기사삭제	인용
43	2022가단5046479	2023-04-05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인용
44	2022가합34992	2023-04-07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45	2022나2034945	2023-04-07	서울고법	2심	추후/손배	인용
46	2021가합598074	2023-04-12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47	2023다200376 2023다200383(병합)	2023-04-13	대법원	3심	정정/손배	인용
48	2020다253423	2023-04-13	대법원	3심	손배	기각
49	2021가합535691	2023-04-14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기사삭제	기각
50	2022가합37298	2023-04-21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51	2022나43131	2023-04-21	서울중앙지법	2심	손배	인용
52	2020나2012620	2023-04-28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기각
53	2022나2039186	2023-04-28	서울고법	2심	정정/반론	인용
54	2022나2048364	2023-04-28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기각

번호	판결번호	선고일자	법원명	심급	청구명	결과
55	2021가단261516	2023-04-28	서울서부지법	1심	손배	인용
56	2022가합10250	2023-05-09	광주지법 목포지원	1심	정정/손배	인용
57	2021가합38508	2023-05-12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58	2022가합35803	2023-05-12	서울서부지법	1심	반론	인용
59	2023다215897	2023-05-18	대법원	3심	정정/손배/기사삭제	인용
60	2022나48483	2023-05-18	서울서부지법	2심	손배	기각
61	2022나2036118	2023-05-19	서울고법	2심	정정	기각
62	2022나2038053	2023-05-19	서울고법	2심	정정/반론/손배	기각
63	2020가합569246	2023-05-31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인용
64	2021가합593437	2023-05-31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반론/손배	기각
65	2023다224433	2023-06-01	대법원	3심	반론	기각
66	2022가합278	2023-06-01	인천지법	1심	정정/손배	인용
67	2022나2029301	2023-06-02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기각
68	2022나2036729	2023-06-02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인용
69	2022나9487	2023-06-08	전주지법	2심	손배	인용
70	2022가합32293	2023-06-09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반론	인용
71	2021가합2665	2023-06-09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기사삭제	기각
72	2022나20661	2023-06-09	수원고법	2심	정정/손배	기각
73	2021가단292498	2023-06-14	서울남부지법	1심	손배	인용
74	2022가합103196	2023-06-15	서울남부지법	1심	정정/반론/손배/기사삭제	기각
75	2023다227531	2023-06-15	대법원	3심	정정/손배	기각
76	2021가합3330	2023-06-16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기사삭제	인용
77	2021가단235449	2023-06-16	서울서부지법	1심	손배	기각
78	2022가합10201	2023-06-21	광주지법 순천지원	1심	정정/반론/손배	기각
79	2022나2033935	2023-06-22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인용
80	(춘천)2022나2549	2023-06-23	서울고법	2심	반론/손배	인용
81	2020가합42036	2023-06-23	서울서부지법	1심	손배	기각
82	2022가합31016	2023-06-23	서울서부지법	1심	손배	인용
83	2023가단106191	2023-06-23	의정부지법	1심	손배	기각

번호	판결번호	선고일자	법원명	심급	청구명	결과
84	2021가합179	2023-06-28	수원지법	1심	정정/손배/기사삭제	기각
85	2023다230285	2023-06-29	대법원	3심	추후/손배	인용
86	2020가합587725	2023-07-05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87	2021가합568370	2023-07-05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손배/기사삭제	기각
88	2023나41427(본소) 2023나41434(반소)	2023-07-06	서울서부지법	2심	손배	인용
89	2020나2030475	2023-07-07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기각
90	2020나2036163	2023-07-07	서울고법	2심	손배	인용
91	2021가합577442	2023-07-07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92	2022가합101204	2023-07-12	부산지법 동부지원	1심	정정/손배/기사삭제	기각
93	2021가합590643	2023-07-12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반론/손배	인용
94	2022가단5319818	2023-07-12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기각
95	2022가단286018	2023-07-13	서울남부지법	1심	손배	인용
96	2022다291320	2023-07-13	대법원	3심	정정/반론/손배	기각
97	2020나2048759	2023-07-14	서울고법	2심	손배/기사삭제	기각
98	2023가합31655	2023-07-14	서울서부지법	1심	반론	인용
99	2022가단106829	2023-07-18	서울동부지법	1심	손배	인용
100	2022나11850	2023-07-20	서울고법(인천)	2심	손배	기각
101	2021가합100241	2023-07-20	서울동부지법	1심	손배	인용
102	2020다286294	2023-07-27	대법원	3심	반론	기각
103	2022가소306340	2023-08-09	서울동부지법	1심	손배	기각
104	2022가합100349	2023-08-09	창원지법 마산지원	1심	정정/손배	기각
105	2022가합565934	2023-08-11	서울중앙지법	1심	반론	인용
106	2023나2011925	2023-08-18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인용
107	2023나2006725	2023-08-18	서울고법	2심	정정/반론/손배/기사삭제	기각
108	2021가합12370	2023-08-22	창원지법 진주지원	1심	정정/손배	기각
109	2022가합51283	2023-08-24	춘천지법 원주지원	1심	손배	기각
110	2021가합5736	2023-08-24	전주지법	1심	정정/손배/기사삭제	기각
111	2022가단210030	2023-08-29	인천지법	1심	손배	기각
112	2022가합561802	2023-08-30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기사삭제	인용

번호	판결번호	선고일자	법원명	심급	청구명	결과
113	2022가소431024	2023-08-31	서울동부지법	1심	손배	인용
114	2021나2008505	2023-09-01	서울고법	2심	정정/반론/손배	인용
115	2022가합37908	2023-09-01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반론/손배/기사삭제	인용
116	2022가단268188	2023-09-06	서울남부지법	1심	손배	인용
117	2022가합54138	2023-09-07	인천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118	2022가소10171	2023-09-14	의정부지법 연천군법원	1심	손배	인용
119	2023나44368	2023-09-15	부산지법	2심	손배	인용
120	2022가단5146515	2023-09-20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인용
121	2022가단5150927	2023-09-22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기각
122	2023나2018995	2023-09-22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기각
123	2022가합552167	2023-09-27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124	2021가단61477	2023-10-11	춘천지법 원주지원	1심	손배/기사삭제	기각
125	2022가단264957	2023-10-12	서울남부지법	1심	손배	기각
126	2021가합11764	2023-10-12	광주지법 순천지원	1심	손배/기사삭제	인용
127	2022나2053717	2023-10-13	서울고법	2심	손배/기사삭제	기각
128	2023나2010014(본소) 2023나2010021(반소)	2023-10-13	서울고법	2심	손배/기사삭제	인용
129	2023가합33873	2023-10-13	서울서부지법	1심	손배/기사삭제	기각
130	2021가합586590	2023-10-18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131	2022나63354	2023-10-20	광주지법	2심	손배	인용
132	2023나2012744	2023-10-20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기각
133	2023나43447	2023-10-20	서울서부지법	환송후심	손배	기각
134	2018가합53541	2023-10-26	인천지법	1심	손배	기각
135	2019가합64067	2023-10-26	인천지법	1심	손배	기각
136	2022가단5146225	2023-10-27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기각
137	2023가소72181	2023-10-31	수원지법 평택지원	1심	손배	인용
138	2022가합53681	2023-11-02	광주지법	1심	손배	기각
139	2023가단73	2023-11-08	대구지법 의성지원	1심	손배	기각
140	2023가단66	2023-11-08	대구지법 의성지원	1심	손배	기각

번호	판결번호	선고일자	법원명	심급	청구명	결과
141	2022가합48505	2023-11-08	부산지법	1심	정정/손배	인용
142	2022가합542214	2023-11-08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손배	인용
143	2023가소1347997	2023-11-09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기각
144	2023가단114606	2023-11-09	부산지법 동부지원	1심	손배	기각
145	2017가합40443	2023-11-10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146	2023가합33132	2023-11-10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손배	인용
147	2022가합563754	2023-11-10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손배	인용
148	2022나73293	2023-11-14	서울중앙지법	2심	손배	인용
149	2022가합107464	2023-11-16	서울남부지법	1심	정정/반론/손배	기각
150	2023가합100132	2023-11-16	서울남부지법	1심	정정	기각
151	2022가단267740	2023-11-17	서울서부지법	1심	손배	기각
152	2021가합592243	2023-11-17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153	2022가단288501	2023-11-21	서울서부지법	1심	손배	인용
154	2023가소108969	2023-11-23	창원지법 김해시법원	1심	손배	기각
155	2020가합35434	2023-11-24	서울서부지법	1심	손배	인용
156	2021가합11896	2023-11-28	창원지법 진주지원	1심	손배/기사삭제	인용
157	2023나11087	2023-12-07	서울중앙지법	2심	손배	인용
158	2022가합105109	2023-12-07	서울남부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159	2022가합507174	2023-12-08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160	2023가합45871	2023-12-08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기사삭제	기각
161	2023가소105404	2023-12-13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기각
162	2023나46170	2023-12-14	서울서부지법	2심	손배	기각
163	2022가합550970	2023-12-15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	기각
164	2023나2012805	2023-12-15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인용
165	2023가소1699728	2023-12-20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인용
166	2022가합562966	2023-12-20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167	2023가합33149	2023-12-22	서울서부지법	1심	손배/기사삭제	기각
168	2023가단210353	2023-12-22	서울남부지법	1심	손배	기각
169	2023가합32473	2023-12-22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손배/기사삭제	기각